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1개월 연장… 세무서 창구 운영 안 한다

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신고·남부기하을 한 달 연장했다.

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 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

법인(7만7000명)은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·납부 를 마쳐야 한다

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 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.

과세기간(6개월) 동안 공급기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 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(5~30%)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 다

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

중소기업·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조 기환급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.

직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고, 직전기 대비 매출이 30%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. 다만,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다

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.

카드씀씀이 5%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…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% 상향

정부가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,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이준 임대인 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%에서 70%로 올린다.

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.

올해 신용·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씀씀이를 지난해보다 5%를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초과한 분의 10%만큼 추

가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

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70%의 세액공제육을 적용하다

단, 월세를 내리기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% 세액공제율을 유지하다.

세액공제율 70%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율의 폭이 커서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고소득 임대인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.

한편,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를 한시 적용한다.

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··· 부가율 15~40% 확대

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 만원으로 오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~40%로 확대됐다.

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경우 간이과 세자로 적용받게 된다.

다만,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, 건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 시설 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. 이중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추후 시 핵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를 적용하다.

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~30%에서 15%~40%로 상향조정됐다.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부부터다.

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→50억원 이상,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비중이 50→30%로 완화됐다.